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-|------|
|------|------|------|

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|
| 제출인 (매수인) | 성명(법인명) 홍길동(계약자명) | 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000000-0000000 |
| | 주소(법인소재지) 등본상 거주지 기재(도로명 주소) | (휴대)전화번호 010-0000-0000 |

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|
| 자기 자금 | 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 원 | 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의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 |
| | ④ 증여·상속 가족 등 증여·상속 조달하는 자금 원 |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현금 또는 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원 |
| |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| 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 |
| | ④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| ⑤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|
| |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, 기존보증(전세)금 회수,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자금 원 | ⑦ 소계 ② + ③ + ④ + ⑤ + ⑥ 자기자금 합계 원 |
| ① 자금 조달계획 |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 금액 합계 원 |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 원 |
| | |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신용대출 자금원 그 밖의 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/ 중도금집단대출금액 원 (대출 종류: 예)중도금집단대출) |
| 차입금 등 | 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 | |
| | 상기 주택담보대출 기재란에 작성하는 경우에만 체크(금회 취득하는 주택 제외하며, 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포함 및 부부공동명의등 지분보유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| |
| | ⑨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또는 현 임차인 전세금 승계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 | 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원 |
| | 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원 | ⑫ 소계 ⑧ + ⑨ + ⑩ + ⑪ 차입금 등 합계 원 |
| | 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| |
| | ⑪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| |
| ⑬ 합계 | ⑦ + ⑫ 합계[(공급금액+발코니확장금액)과 동일하여야함] 원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| 총 거래금액 | ⑬[(공급금액+발코니확장금액)과 동일하여야함] 원 |
| | ⑮ 계좌이체 금액 | ⑬ 원 |
| | 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 | 원 |
| |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| 원 |
| | 지급 사유 ()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⑱ 입주 계획 우측 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| 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3 년 10 월) | [] 임대 (전·월세) | 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<p>첨부서류</p> | <p>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: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주식·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·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증여·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: 증여세·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.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. 회사지원금·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-------------|---|

작성방법

1. ① "자금조달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2. ② ~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3. ② "금융기관 예금액"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③ "주식·채권 매각대금"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"증여·상속"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6. ⑤ "현금 등 그 밖의 자금"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"보유 현금"에 √표시를 하고, 현금이 아닌 경우 "그 밖의 자산"에 √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7. ⑥ "부동산 처분대금 등"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.
8. ⑦ "소계"에는 ② ~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⑧ ~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⑧ "금융기관 대출액 합계"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자금을 적고,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의 해당 난에 √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,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 중 "보유"에 √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(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)를 적습니다.
11. ⑨ "임대보증금"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.
12. ⑩ "회사지원금·사채"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13. ⑪ "그 밖의 차입금"에는 ⑧ ~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에는 ⑧ ~ ⑪의 합계액을,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⑭ "조달자금 지급방식"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16. ⑮ "계좌이체 금액"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.
17. ⑯ "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"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18. ⑰ "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"에는 ⑮,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19. ⑱ "입주 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(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)으로 적으며, "본인입주"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, "본인 외 가족입주"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.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"그 밖의 경우"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

| 자조사 기재항목 | 증빙자료 | 제출 여부 | 미제출사유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기 자금 | 금융기관 예금액 | 예금잔액증명서 | ○ | 제출완료 |
| | | 기 타 | | |
| | 주식·채권 매각대금 | 주식거래내역서 | | 해당없음 |
| | | 예금잔액증명서 | | |
| | | 기 타 | | |
| | 증여·상속 | 증여·상속세 신고서 | | 해당없음 |
| | | 납세증명서 | | |
| | | 기 타 | | |
| |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| 소득금액증명원 | | 해당없음 |
| |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| |
| | | 기 타 | | |
| | 부동산 처분대금 등 | 부동산 매매계약서 | X | 매도의뢰 증으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미체결 |
|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| | X | | |
| 기 타 | | X | | |
| 차입금 | 금융기관 대출액 | 금융거래확인서 | X | 11월 중도금대출 신청 예정 |
| | | 부채증명서 | X | |
| | |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| X | |
| | | 기 타 | X | |
| | 임대보증금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| | 해당없음 |
| | 회사지원금·사채 |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 해당없음 |
| | 그 밖의 차입금 |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○ | 제출완료 |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

2021년 0월 0일

제출인 **홍길동(서명 또는 인)**